

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

1994년 12월 30일

제1조(목적)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1. “용자”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(이하 “이 회계”라 한다)의 용자 및 유가원충계정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기관(이하 “용자대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대출”이라 함은 용자대상기관이 용자금을 직접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사업의 범위등)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 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 관리사업
2.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
3.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
4.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
5. 농어촌전력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력화사업
6. 국제협약에 의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광업법·해저광물자원개발법·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
7.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,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조사사업

8.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
9.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,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사업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
10. 제1호 내지 제9호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

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및 자원관련 기관·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원
2.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
3.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
4.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자원연구소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

제4조(용자조건등)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기관에 관한 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. 다만, 용자이자율과 용자기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② 용자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5조(용자대상기관)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용자는 한국석유개발공사
2. 제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대한 용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다만, 석탄산업법 제28조제1항제

2호·제4호 및 제7호의 사업에 대한 용자는 대한석탄공사로 한다.

3.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용자는 에너지관리공단

제6조(용자금의 감면) 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경우

2.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·지변, 국내·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석유개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용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

② 용자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7조(유가원충준비금의 운용)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원충준비금(이하 "준비금"이라 한다)의 적립상황 및 운용결과를 이 회계의 결산보고를 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준비금을 유가원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인출이 가능하도록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하되, 수익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계사무의 위탁)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 및 준비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에 일부를 다음과 같이 위탁한다.

1. 이 회계의 세입의 수납, 예산의 지출·결산·자산관리(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를 제외한다) 및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는 한국석유개발공사

2. 이 회계의 자산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한석탄공사

② 제1항 각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개발공사 및 대한석탄공사는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·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, 연간실적은

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한국석유개발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의 사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용자에 관한 경과조치)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현재 용자 및 유가원충계정에 귀속된 용자금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대상사업별로 용자 또는 대출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용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등 용자 및 대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◇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정이유◇

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 제정(1994. 3. 24 법률 제475호)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◇주요골자◇

가.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가 지원하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동 회계가 출원할 수 있는 대상기관·단체를 규정함(령 제3조).

나.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용자 및 유가원충규정에서 용자하는 대상기관을 정하고, 그 금리·기간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(령 제4조 및 제5조).

다. 석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등에는 용자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(령 제6조).

라. 유가원충준비금의 적립상황 및 운용결과를 회계의 결산시 보고하도록 하고, 동 준비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령 제7조).

마.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사무의 일부를 한국석유개발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령 제8조). <법제처 제공>